

영국의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 및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조은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n Study on Regulations and Costing Models for Mobile Termination Charges

Eunjin Cho

ETRI

요 약

영국은 1999년 이전까지는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다가 원가방식의 착신접속료 규제를 도입하였다. FDC 방식 원가산정모형을 적용하다가 2003년부터 LRIC 방식의 이동망 원가모형으로 변천하였다. EU Directive에 따라 통신법이 제정되면서 시장경쟁분석을 토대로 기존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신규 규제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망 착신접속시장의 경쟁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착신접속료 규제를 살펴보고 변경된 이동망 착신접속료 결정방법과 인하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기존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동망 착신접속료 산정방식을 정리하였다.

I. 머리말

영국은 EU Directive에 따라 2003년 7월 15일 새로운 통신법을 제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기존 접속료 제도의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규제기관인 Ofcom은 이동전화 시장을 재점검하고 기존 이동망 접속료 제도를 일부 수정하였다. 당초 2006년 3월까지 적용계획이던 기존 LRIC 원가산정방식에 의한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2004년 8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하고, 2004년 9월부터는 수정된 LRIC 산정 결과를 적용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LRIC 산정결과는 기존 산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영국의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규제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이동망 착신시장 규제 조치를 위한 시장 경쟁 상황 검토 자문서의 주요 내용 및 이동망 착신접속료 결정 과정에서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II. 영국의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 변천사

1. FDC 방식 이동망 착신접속료(99년 4월~03년 3월)

영국은 1999년 이전까지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규제하지 않았다. 1998년 영국의 규제 중재기관인 MMC(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¹⁾는

Vodafone과 Cellnet²⁾이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높게 부과하여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Oftel³⁾은 FDC 방식으로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산정하고 2002년 3월까지 매년 RPI-9%씩 인하하도록 결정하였다.

[표 1] 원가(FDC) 기준 적용(99/00~02/03년)(단위: PPM, nominal value)⁴⁾

| 사업자 | | 99/00 | 00/01 | 01/02 | 02/03 |
|-------------|-------------------|-------|-------|-------|-------|
| 900/1800MHz | Vodafone (RPI-9%) | 11.7 | 10.86 | 10.2 | 9.4 |
| | O2 (RPI-9%) | 11.7 | 10.86 | 10.2 | 9.4 |
| 1800MHz | T-Mobile | 비규제 | | | |
| | Orange | | | | |

자료:CC, 이동망 착신접속료 인하결정 보고서 P.25, 2002.12.

2. LRIC 방식 이동망 착신접속료(03년 4월 ~ 04년 8월)

2001년 9월 Oftel은 기존 규제가 만료되는 시점

- 1) Competition Commission으로 변경됨. 이하 CC로 표기
- 2) O2로 변경됨
- 3) Ofcom의 전신 기관으로 2003년 12월 29일 변경됨
- 4) 99/00년 시작접속료에서 매년 RPI-9% 인하율 적용됨. Vodafone과 O2에 착신접속료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1800MHz 사업자는 규제하지 않음